

의안번호	2203876
의 퇴 인	김용만의원
회 답 일	2024. 9. 25.
추계번호	24C3748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(기념사업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 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(이하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) 건립 및 보존사업 - 조형물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(기념사업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수행 사업 내용 추가(안 제11조)

- 개정안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등의 건립 및 보존사업과 조형물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고, 이와 관련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사업대상이 되는 조형물등의 형태와 규모 등을 예측

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현황(2024년 기준)은 다음과 같음

[표]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현황(2024년)

구분	내용	예산액 (백만원)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	기림의 날, 청소년작품공모전	300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및 조사·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	국내 전시사업	300
	조사·연구	413
	교육·홍보	176
	아카이브	391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	국제 컨퍼런스	168
	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사업	50
	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	121
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	추모비 제작	185 (’17년)
	추모공간 정비	20 (’19년)

자료: 여성가족부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